

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개정

1. 개정이유

물품 보관, 분류, 유통 용도로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적층식 랙 시설물에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재 위험성 증가 적층식 랙의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고 소방관련 법규 개정 사항 반영, 용어의 명확화 등 일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적층식 랙에서 화재유발 작업행위 작업금지(별표1)

-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시 '화재예방 부문'에 적층식 랙의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제한하고 관련정보를 관리하도록 항목 신설

나. 소방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현행화 반영(별표1)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으로 분법(시행 '22.12.1)에 따라 법률사항 반영
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자동화재속보 설치대상에 창고시설이 제외됨에 따라 관련 부문 삭제

다. 용어의 명확화(제2조)

- 화재안전계획서, 적층식 랙, 방문자 등 모호한 용어에 대한 명확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개정

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화재안전 관리계획서”이란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하려는 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.
2. “적층식 랙”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(KS)의 랙 용어(KS T 2023)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하며, 물류창고 내 설치된 중간층도 포함한다.
3. “방문자”란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자로서 물류창고업자가 정규직, 임시직 형태로 고용한 인원을 제외한 물류창고 체류자를 말한다.
4. “발화원”이란 불꽃, 불씨, 고온, 가연성 물질, 전기·화학 시설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환경을 말한다.

제2조를 제3조로, 제3조를 제4조로, 제4조를 제5조로 한다.

제5조 중 “2022년 7월 1일”을 “2023년 7월 1일”로 한다.

별표 1의 제목에서 “제3조 관련”을 “제4조 관련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가. 화재예방 부분에 순번 6의 본문중에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가. 화재예방 부분에 순번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) 물품 보관을 위해 설치된 적층식 랙(메자닌)에서 용접·용단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금지하는 조치
다만,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별표1의 나. 화재대응 부분에 순번2를 삭제한다.

별표1의 나. 화재대응 부분에 “순번3에서 순번6”을 “순번2에서 순번5” 로 한다.

별표1의 나. 화재대응 부분에 “메자닌(어떤 층과 다음 층 혹은 천장과의 중간에 만들어진 기준층보다 작은 층)의 설치 여부와 적층식 랙(메자닌)의 구체적인 규격 등”을 “적층식 랙(메자닌) 설치 여부, 사용 용도 및 구체적인 규격 등”으로 한다.

별표2의 제목에서 “제3조 관련”을 “제4조 관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<신 설></p> | <p>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화재안전 관리계획서”이란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하려는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. 2. “적층식 랙”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(KS)의 랙 용어(KS T 2023)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하며, 물류창고 내 설치된 중간층도 포함한다. 3. “방문자”란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자로서 물류창고업자가 정규직, 임시직 형태로 고용한 인원을 제외한 물류창고 체류자를 말한다. 4. “발화원”이란 불꽃, 불씨, 고온, 가연성 물질, 전기·화학 시설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환경을 말한다. |
| <p>제2조 ~ 제3조 (생략)</p> <p>제4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</p> | <p>제3조 ~ 제4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</p> |

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
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
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
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
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별표 1]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
획서 작성 지침(제3조 관련)

가. 화재예방 부분

1)~5) (생략)

6) 화기취급 작업자는 화기를 취급하
기 전에 작업 시간, 장소, 작업 종류
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「화재
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
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안
전관리자에게 신고하는 조치

7) (생략)

<신 설>

나. 화재대응 부분

1) (생략)

2)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
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동
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인 창고에서
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
한 경우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
도록 하는 조치

2023년 -----

[별표 1]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
획서 작성 지침(제4조 관련)

가. 화재예방 부분

1)~5) (현행과 같음)

6) ----- 「화재의
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

7) (현행과 같음)

8) 물품 보관을 위해 설치된 적층식 랙
(메자닌)에서 용접·용단 등 화재 발생
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금지하는 조치
다만,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가
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
화재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나. 화재대응 부분

1)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| | |
|--|---|
| <p>3) ~6) (생략)</p> <p>라. 기반자료 부분 1)~3) (생략)</p> <p>4) <u>메자닌(어떤 층과 다음 층 혹은 천장과</u> <u>의 중간에 만들어진 기준층보다 작은 층)</u>의 설치 여부와 <u>적층식 랙(메자닌)</u>의 구체적인 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·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</p> <p>[별표 2]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(<u>제3조</u> 관련)</p> | <p>2) ~5)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기반자료 부분 1)~3) (현행과 같음)</p> <p>4) <u>적층식 랙(메자닌) 설치 여부, 사용 용도 및 구체적인 규격</u>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·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</p> <p>[별표 2]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(<u>제4조</u> 관련)</p> |
|--|---|